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 몇 가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때 : 2007. 4. 10.(화)

곳 : 부산 코모도호텔 1층 충무홀

언론중재위원회

## 토론회 순서

10 : 30	개회 및 인사 인사말 : 조 준 희 위원장
10 : 40	주제발표 발표자 : 김 민 남 위원 (동아대 신방과 명예교수)
11 : 30	토 론 사회자 : 고 종 주 중재부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12 : 30	오찬 및 간담
13 : 30	폐 회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목 차

I 서론 : 문제 제기 .....	1
II 언론의 사회세력화와 공적 규제	
1. 언론의 속성과 권력화 .....	3
2.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	6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등의 조화 .....	7
III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와 취재 관행	
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 .....	9
2. 취재 관행 .....	14
IV 결론 : 조정심리제도의 활성화와 언론 활동의 조화 .....	16

주제논문

#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 몇 가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김 민 남

(동아대 신방과 명예교수)

# 언론조정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 관행의 문제

- 몇 가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김 민 남  
(동아대 신방과 명예교수)

## I 들어가는 말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 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한국은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갖추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에 관한 조정과 중재라는 제도는 사법부에 의한 전통적인 소송절차제도에 비해 상당한 특징과 장점을 지닌 것으로서, 매우 성과 있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석희태, 2006). 중재위원회라는 법정기관을 활용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는 반론권 제도가 일반화된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한국 법체계상의 독특한 제도로 법원이 아닌 기관에 의해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후 반론보도청구권 등에 대한 중재를 해오면서 초기부터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김창룡, 2001)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핵심 중재대상인 반론보도청구권의 위헌시비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1. 9. 16. 선고 89헌마65 결정)이 나오고 중재활동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해소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의 조정제도 실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재위원회의 중재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견해에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Lee, 1998).

먼저 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활동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언론중재제도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보상 효과가 미약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중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합의를 거부했을 경우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장호순, 2003; 김창룡, 2001)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를 둘러싼 다툼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 가능성이 적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조정결과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필요적 중재제도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중서, 1994).

이에 반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양삼승(2000)은 1981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언론중재 사건 신청 현황을 분석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사건들이 중재 성립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30.4%)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신청취하 항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성립을 토대로 한 취하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중재과정에서의 합의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재위원회 조정실적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이상 한편으로 중재 대상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언론피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포괄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입법배경이 되었는데 종전의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분리되어 2005년 언론중재법으로 독립입법되었으며 시행된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해 이 법의 몇몇 조항에 대한 일부 언론사들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 결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약간의 파동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은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를 둘러싸고 신청인인 '피해자'와 피신청인인 언론사

사이의 주장을 조정하는 조정심리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언론피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거나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언론사들이 반론, 정정보도 때로는 손해 배상 등의 결정을 받는 경우 궁극적으로 언론사의 명예나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취재 관행 등 제작 과정상 문제점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일선 기자들이 사실확인, 현장접근, 취재 대상의 의견이나 입장 등을 살피고 그 윗선의 게이트 키퍼(gate keeping) 과정 등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서와 같은 분쟁 등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부산 중재부의 경우, 2005년 조정신청건수가 35건 이었던 것이 2006년엔 42건으로 늘었다. 서울은 592건에서 709건, 대구 14건에서 31건, 광주 44건에서 55건, 경기 87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체적 사건의 조정심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법익이 상충되는 경우 비교제량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화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로 일컬어질 만큼 핵심적 기본권이요 민주주의 질서 유지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자유도 개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규정이고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언론중재법의 운용에서 앞서 언급한 '조화'가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언론이 사회적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래서 언론은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조화'를 찾는 일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 언론의 사회세력화와 공적 규제, 제3장 언론에 의한 피해사례와 취재 관행, 제4장 조정심리제도의 활성화와 언론활동의 조화로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제3장에 역점을 둘 것이다.

## II 언론의 사회세력화와 공적 규제

### 1. 언론의 속성과 권력화

언론에 대해 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이 갖는 정보매체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물론 보다 근원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언론자유가 사실상 언론에 위임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론은 그 특성상 사적 활동을 통해 공적 효과를 내는 이중성을 갖는다. 즉, 언론활동의 결과물은 정신적 산물인 동시에 경제적 상품이다.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언론활동을 통해 나오는 정신적 산물 역시 상품으로 판매된다. 전통적인 언론자유 개념도 이러한 사유재산권과 결합하여 발전되어 왔다(주동환 외, 1995).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이 생산한 정보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언론은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공중이 적은 한계비용으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다원화되고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정부활동이나 여타의 공공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공중의 대리자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전통적으로 '사회의 감시자'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왔다. 이처럼 언론 그 자체는 사적 영역의 집합체이지만 그것의 기능은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적 존재양식의 언론에 대해 공적 임무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것이다(Gurran & Gurevitch, 1991).

공적인 기능이 강조되는 속성을 지니는 언론은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점차 권력화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하고 수많은 매체에 의한 기사보도의 편재성(偏在性), 기사취재와 편집에서 나타나는 언론인들의 공명성(共鳴性), 중요기사 등을 비롯한 기사 보도의 반복성(反復性)이라는 또다른 언론의 속성과 무관치 않다. 언론의 대사회적 영향이 크고 강력하다는 것이다(김민남, 2004).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권력화를 표현하는 말 중의 하나가 언론을 '제4부'라고 일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미디어의 정치적 기능은 무엇보다 사회 각 영역의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며 또한 이에 관한 자신의 논평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정치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언론은 정치집단으로 하여금 권력을 획득하게 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권력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모호한 개념이다. 베버(Weber, 1972)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미디어가 권력체라는 것은 미디어의 일상적 활동이 자기가 속한 사회와 그 정치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말한다. 물론 미디어 역시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 미디어와 정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정치가 미디어에 주는 영향은 적으나 미디어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정치의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서 비롯된다. 이 경우 미디어는 자신의 논리를 정치에 투영시키면서 정치 논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정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치가 미디어에 주는 영향과 미디어가 정치에 주는 영향이 모두 큰 경우는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한다. 민주화된 국가의 형태는 주로 미디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미디어 의존 또는 상호의존 범주에 해당하며, 미디어의 권력화 현상 역시 이 범주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조항제, 2001).

대중매체가 행사하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은 한국사회뿐 아니라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미지가 현실을 압도하는 시대에 대표적 이미지 창출 기구인 대중매체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한국의 언론은 하나의 보편적 사회제도로서 고유 기능에 근거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순한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의 독자적 권력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국 언론의 제도적 성장 과정을 보면 국가에 대해 파수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시기구로 정착하면서 독자적으로 자기권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관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박승관·장경섭, 2001).

한국 사회의 언론 권력화는 인적 네트워크 즉, 연고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고는 사회성원의 이익과 목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 권력적 자원이다(박승관, 1994).

공식적 차원에서 정치적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의 경우 연고를 중심으로 상호 동질적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고를 매개로 상호 담합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화할 수 있는 정서적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여론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의견의 다양성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연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적 신뢰 집단의 이익이 전체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에 투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기자의 성별, 인종, 학력, 언론 경력 등

이 기자가 생산하는 내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권장원, 2004).

## 2.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하버마스(Habermas, 1990)의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에 관한 연구 이후 공론장(Öffentlichkeit) 개념은 언론학 또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Merten, 1987).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독일에서 등장한 시민사회의 카테고리이다. 현대에 있어서도 공론장과 관련 있는 개념들, 즉 ‘여론’, ‘공중’, ‘공적 영역-사적 영역’ 등은 사회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열쇠고리적 언설(言說) 또는 담론으로 역할을 한다. 동시에 현대의 여러 제도, 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질서의 기본이념을 이끄는 중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론장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이며 역사적 맥락에서 또는 이론적 맥락에서 상이하게 이해되어지며 사용되어지는 개념이기도 하다. 사전적으로 공론장의 의미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뢰셔(Hölscher, 1978)에 의하면 공론장은 ‘개방(offen)’의 개념에서 파생되었으며 또한 ‘공동(gemein)’의 유사어로 사용된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규범적 모델의 맥락에서 보면 공론장은 사적인 범위 밖으로 나온 행위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생산된다. 그 목적은 공동의 이해와 관심사에 대해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자 함이다(Peters, 1994).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참여는 일종의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며 이를 ‘공중’(Publikum)이라 부른다. 공론장의 개념은 때론 이러한 집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장, 유지되는 사회적 영역 또는 사회적 공간(public sphere, public space)의 내연적 의미로서 흔히 사용된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공론장은 단일하지 않으며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어질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버마스는 언론과 같은 현대의 공론장이 국가영역의 확장과 경제이해세력의 확대 등장으로 크게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질적인 하락의 한 원인으로 대중매체를 지적하고 있다.

하버마스(1990)는 현대사회의 대중매체는 상업적인 목적과 관련, 그 덩치는 커졌지만,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매스미디어가 공적 영역의 능동적 토론의 주요 대상이었던 정치를 수동적인 '구경'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주요 공론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대중매체가 상업성을 갖게 됨으로써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장이 결합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대중매체의 변질은 '난상토론을 통한 의사형성'이 '홍보', 'PR', '여론조사' 등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이 권력화된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론장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오늘의 우리 언론을 성찰적으로 들여다보는데 대단히 유용한 시각이라고 하겠다.

###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등의 조화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해 사회부조리를 적극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상충하는 경우 상호 조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법익임을 의미한다.

언론이 공론장으로서 역할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 자유의 보장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형법과 민법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진실성, 상당성, 그리고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즉,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공익성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보도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이거나 공인에 관한 것일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재위원회라는 법정기관을 활용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위해 마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등에 대한 상호 조화적 법익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격권 등의 보장과 관련하여 동법 제4조에서는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1항에서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인의 인격권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표 1〉 법률상 언론피해구제방안 채택 현황 비교<sup>1)</sup>

구 분	민 법	형 법	언 론 중 재 법
정정보도청구제도	× *	×	○ (법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반론보도청구제도	× *	×	○ (법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추후보도청구제도	× *	×	○ (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손해배상청구제도	○ (법 제750조, 제751조)	×	○ (법 제18조, 제24조, 제30조 제1항, 2항)
인격권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제도	×	×	○ (법 제30조 제3항)
인격권침해관련 물건폐기 등 청구제도	×	×	○ (법 제30조 제4항)
명예회복처분청구제도	○ (법 제 764조)	×	○ (법 제31조)
시정권고청구제도	×	×	○ (법 제32조)
형사처벌제도	×	○ (법 제390조 명예훼손죄, 제311조 모욕죄, 제313조 신용훼손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

\* 민법상 명예회복처분의 구체적 방법으로 채용될 수도 있음.

1) 「언론중재 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석희태, 2006,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3쪽.

반면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규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의 성격이 짙은 법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상충되는 법익의 조화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 Ⅲ 언론에 의한 ‘피해’ 사례와 취재 관행

#### 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

##### 〈사례 1〉 인격권 침해 및 손해배상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경찰의 짜맞춘 조작증거에 의해, 변사한 막내 동생을 살인한 혐의로 2003년 8월 27일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다.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 긴급체포되면서 진실을 조작, 호도, 왜곡했다. ▲이에 신청인은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A언론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 신청인을 직접 만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신청인 가족 등에 대해 취재하지도 않은 채 「빛독촉 동생 살해, 손가락 잘라 유기, 카드빚 40대·피해자 숨겨」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가족들의 고통이 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A신문 등의 보도기사 사본과 함께 1심에서 대법원 재판까지의 ‘무죄’ 선고 재판기록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1심판결 결과 무죄선고사실은 보도한 적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 결과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당시 담당기자가 휴가중이어서 충분한 취재를 하지 못했으며 ③ 신청인이 원한다면 추후보도를 성의껏 해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이 사건이 지나는 엽기성과 함께 사회에 준 엄청난 충격에 비추어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의 추적 그리고 추후 보도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항소심까지도 무죄선고를 받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되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사건진행의 추적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상당 수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추후보도는 때로는 다시 한번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시의 고통을 떠올리게 할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은 추후보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피해구제신청 이전에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당시 지방주재 담당기자가 휴가중이어서 충분한 취재를 못했다고 하고 있다. '빛 때문에 동생을 살해한' 엄청난 성격의 살인사건인만큼 다른 기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 또 경찰수사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가족 등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언론의 취재속성상 마감시간에 쫓기고 타 매체와의 속도경쟁 등을 해야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언론사의 입장이나 관행이 사건의 정상 참작은 될지언정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취재, 제작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관행이 때로는 언론사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조화 노력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조정심리결과 합의에 이른 손해배상규모가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었는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현장 확인 등의 소홀로 발생하는 잘못된 보도와 이에 따른 반론·정정보도신청 이행 사례가 많아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면 무엇보다도 해당 언론사는 물론 전체 언론의 사회적 신인도가 떨어져 보다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언론은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요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한다.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여론형성의 마당이요 집산지이기도 하다.

## 〈사례 2〉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명의 괴한들에게 아파트 입구에서 납치되어 성폭행 및 금품갈취를 당한 피해자이다. B언론사는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CCTV 화면에 비친 신청인의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CCTV 화면을 사전에 신청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보도하여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어떠한 화면 보호 처리도 없이 보도하여 이미 사건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의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B방송사의 보도기사 전문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CCTV 화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송사가 이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사 편집요원들도 CCTV의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시하여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며 ② 신청인이 당한 범행 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고, 이를 두고 단순 성추행이라고 보도하기도 곤란하여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폭행’이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즉 언론사의 취재 및 제작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피신청인은 CCTV 화면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편집요원들의 견해도 동일하여 그대로 보도했다고 하고 있다. CCTV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으나 피해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특징 등이 드러나며,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나 같은 동네 주민이나 친척 등 주변 인물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어떠한 화면보호처리도 없이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신변보호나 인격권보호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상당 수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료 화면의 보도는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보도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보도 과정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성폭행이란 개념은 법률적으로는 기수와 미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수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당한다는 점이다. 성폭행으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언론사의 취재속성이나 기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언론사의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조화 노력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언론의 잘못된 취재관행이 인권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 언론사는 보도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사례 3〉 명예훼손 및 반론보도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C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기사에서「고속도 판매 ‘경주뽕’은 가짜」등의 제목으로 신청인은 타인의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경주뽕〉의 명칭과 동일한 〈경주뽕〉 명칭을 사용, 신청인이 제조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함으로써 타인 상표권을 침해하고 경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은 ‘경주뽕’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그 명칭만으로는 타인의 상표권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자신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C언론사의 보도기사 사본과 함께 10건의 관련서류들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K 통신사의 보도를 전제한 것이고, ② K 통신사 취재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충분히 사실이라고 확신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피신청인 C 언론사의 제작과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언론사들은 K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보도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신청인은 K 통신사 취재기자에게 사실 확인 후 보도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피의자

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K 통신사 취재기자의 말에 의존한 것은 잘못된 취재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중재부의 조정 등으로 쌍방 합의에 의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과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언론사의 고충도 이해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적 보도가 때로는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언론사는 타사보도를 전제하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 절차에 엄밀성을 기해야 하겠다. 이 보도로 인해 신청인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한 상품의 철거를 요구받고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한 바 있다.

#### 〈사례 4〉 명예훼손 및 손해 배상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해양경찰서에 연행되어 40여 일간 수사를 받았으나 다시 20일 간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신청인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경찰발 표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 당시 신청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D언론사는 피의자 신분이 된 신청인을 직접 만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본산 고등어 국내산 둔갑 시중 유통」의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고 납품회사로부터 납품거절을 받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D언론사의 보도기사 사본과 함께 무혐의 사건처분 결과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조정심리과정에서 보면 피신청인은 ① 경찰의 공식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고, 경찰이 직접 제작한 영상자료까지 있었으므로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일본산 고등어를 공급한 공급업자의 인터뷰까지 보도하는 등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음을 밝혔다.

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선 피신청인 즉 D 언론사가 경찰의 공식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도에서 신청인의 상표가 그대로 방송되어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언론이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둘째로 피신청인은 일본산 고등어를 공급한 공급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확인을 위해 공급업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보도대상이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찰수사발표만을 그대로 믿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정황을 두루 살펴봐야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는 중재부의 조정 등이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언론의 부주의한 보도로 인해 언론 스스로는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수반하는 법적 공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언론 취재윤리와 보도 엄정성의 중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취재 관행

취재와 보도를 주 임무로 하는 언론조직은 여타 일반 조직과는 달리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뉴스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는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해진 마감시간 내에 이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예상외의, 그리고 무한정의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 사건들 중에서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어 분류하고 유목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작업을 관행화시켜야 하며 특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취재 조직은 더욱 많은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와 아울러, 좀 더 저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행들을 선호한다.<sup>2)</sup>

관행이란 언론인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형식화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일과 행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형성된 관행은 기자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일의 수행을 통해 즉각적인 주변 환경을 형성한다. 조직은 이런 관행을 통해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조직적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Shoemaker & Reese, 1996).

뉴스가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기사화 방식, 나아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나름의 관행들을 발달시킨다. 물론 이들 관행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조직

---

2) Shoemaker & Reese, 1996; Turow, 1992; Tuchman, 1973

이 당면하는 물리적 제약들에 잘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다(김동규·김경호, 2005).

이렇듯 일상화된 취재 관행은 내외적 여건 등으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김민남, 1998). 언론조직과 종사자들의 필요성에 부합해서 생긴 실질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 언론 행위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츠와 그 동료(Bantz, et al.)들은 이러한 관행들이 고도화된 언론조직일수록 융통성이 결여되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자의 개인적인 참여와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러한 조직 환경 아래서는 기자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맡은 바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저널리스트의 직업적 가치가 장려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1981).

취재 관행은 언론사의 물리적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언론보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한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의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사실 미확인 보도이다. 기자들은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취재원 특히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제약을 받는 기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취재원을 선택하고 사실 확인이 덜 필요한 공신력 있는 조직화된 취재원을 선호한다(장호순·오수정, 2001). 언론에 의한 피해 주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력 있는 취재원인 경찰, 검찰이나 행정관서 등의 발표에 의존하여, 사실 확인 및 현장 접근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 언론은 비교적 취재원의 관변 의존적 성향이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둘째, 조직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신문사들의 취재 조직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기자들이 뉴스를 패거리(pack)로 취재하는 관행을 만들어낸다(김동규 2004). 특히, 뉴스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확고한 외적 기준이 없는 경우, 독자적인 취재보다는 패거리 보도를 선택하고 다른 경쟁기자들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의존 관행은 보도의 유사성과 획일성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례 3>에서 알 수 있듯이 취재 대상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현장 확인을 생략한 채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전재하는 관행에 의존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겠다.

#### IV 결론 : 조정심리제도의 활성화와 언론 활동의 조화

“인류의 생활조건을 개선해 나가려 한다면 철학자, 신학자, 입법가, 정치가 그리고 도학자(道學者)들은 그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어렵고도 위험하며, 그러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신문(언론)에 대한 규율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언론 없이 인간을 통치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현재 신문이 있어도 인간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존 아담스(John Adams)의 지적은 언론활동 필요성과 함께 언론 규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해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은 정부활동이나 여타의 공공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대행해주는 공중의 대리자로 역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회의 감시자’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중개자’로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왔다. 이처럼 사적 존재양식의 언론에게 공적 임무가 강조되는 언론은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핵심적 사회세력화되고 있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자기권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언론은 때로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언론기관이 갖는 정치적 권력에 비추어 거대언론을 상대로 한 개인의 피해구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언론피해 구제의 완전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한 사법적 구제의 길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갖는 위력에 비추어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는 경제성·신속성·실효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로서 언론중재제도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한입법의 원천적 금지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면 그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도 만들 수 있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한입법의 한정적 허용구조’라는 헌법체계를 갖고 있다(박형상, 2002). 언론중재법도 ‘한정적 허용구조’의 연장선상에서 존재 근거가 이해된다. 하지만 이 법을 비롯해서 언론자유에 관한 제한입법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단서규정의 정신은 언론중재법의 운용과 조정심리과정 등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형법과 민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호소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입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사에게도 법적 불안정 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자유로운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법(ADR)의 하나인 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진·유재웅, 2004).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는 사실확인, 현장접근, 취재 대상의 의견이나 입장 확인 등의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정 신청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취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언론의 취재시스템 개선으로 인격권 침해가 예방된다면 언론활동이 촉진되고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언론자유를 신장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제도는 인격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제도임과 동시에 언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뿐만 아니라 언론활동을 활성화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조정심리제도가 기능하고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운용의 묘’와 ‘조화의 미덕’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논의한 사례들은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에서 조정 심리한 사건들이다. 현재 지역 언론의 위기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을 덧붙여 심리과정에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언론의 경영상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해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이다. 한마디로 거대 중앙지의 지역 침투 등으로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를 중앙지가 지배하고 있다. 광고시장도 마찬가지다. 방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편성, 집행, 장비, 인력 등 모두 중앙방송 중심이다.

오늘날 지역언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역언론이 지역사회로부터 기대받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산업적 위기, 정체성 위기, 공동체성 위기 등이 겹쳐 있다. 지역언론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산업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김민남, 2003).

전국토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 인구의 48%가 살고 있다. 정부중앙부처 100%, 기타공공기관 84%, 총량경제력 53%, 금융거래비중 70%, 조세수입비중 71% 등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런 심각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공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도 스스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

## 참고문헌

- 권장원 (2004). 한국 언론사의 관계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 : 연고에 의한 사적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164~188.
- 김동규 (2004). 발표저널리즘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93호, 4~17.
- 김동규·김경호 (2005).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33~68.
- 김민남 (1998).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남 (2003). 「지역공동체와 공공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남 (2004). 지방분권과 지역뉴스가치, 「지역기능 다각화에 따른 전국부 역할 모색」, 이경자 편, 서울: 삼성언론재단.
- 김종서 (1994).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제5집). 서울: 헌법재판소.
- 김창룡 (2001).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 17~28.
- 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367~396
- 박승관·장경섭 (2001).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 35집 2호, 91~114.
- 박형상 (2002). 언론소송에 있어서의 실체적 구제수단. 「언론중재」, 1991년 가을.
- 석희태 (2006). 「언론중재 제도의 기능과 관련법의 새로운 쟁점」,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양삼승 (2000). '언론피해구제법' (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관련 법

- 률의 쟁점과 개선방안」세미나(2000.11.23~25, 대전).
- 이재열 (1999). 합리적 개인, 비합리적 사회. 「계간 사회비평」, 22, 22~29.
- 이재진·유재웅 (2004). 언론중재제도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 (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267~293.
- 장호순 (2003).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세미나 (2003.8.28~8.30 속초).
- 장호순·오수정 (2001). 한국 신문의 취재원과 취재경로분석. 「보도비평」, 통권7호, 9~62.
- 조항제 (2001). 미디어 권력화의 조건에 대한 이론적 분석. 「언론과 정보」, 제 7호, 165~196.
- Bantz, C. R., McCorkle, S. & Baade, R. C. (1981). The News Factory. G.C.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Vol 2, 336~390.
- Habermas, Jürgen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Neuaufl. Frankfurt/Main: Suhrkamp.
- Hölscher, Lucian (1978). Öffentlichkeit. In: Brunner et al. (Hrs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 4 (pp. 413-467). Stuttgart: Ernst Klett.
- James, C. and Gurevitch, M. (eds.) (1991).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 Edward Arnold.
- Keane, J. The Media and Democracy, 주동환 외 역(1995). 「언론과 민주주의」, 서울 : 나눔.
- Lee, J.(1998). Press freedom,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nd social changes in South Korea: 1981-1996.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 Merten, Klaus (1987). Öffentlichkeit. In: A. Görlitz / R. Prätorius (Hrsg.), Handbuch Politikwissenschaft(pp. 332-337). Reinbeck: Rowohlt.
- Peters, Bernhard (1994). Der Sinn von Öffentlichkeit. In: Friedhelm Neidhardt (Hrsg.), Öffentlichkeit, Öffentliche Meinung, Soziale Bewegungen(pp. 42-76).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Shoemaker P. J., Reese S. D. (1996, Eds). Mediating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 on Mass Media Content, Longman.
- Tuchman, G. (1973). Making News by Doing Work: Routinizing the Unexpec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pp. 110~131.
- Turow, J. (1992). The Production Process, Media System in Society, Longman.
- Weber, M. (1972). Wirtschaft und Gesellschaft :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Studien-ausgabe, Tuebingen : Mohr.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시 행 : 2005. 7.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各款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